

II. IMF 경제 정보

1. 금주의 정책 이슈

□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기준」 고시(案)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결합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
 - 기업결합 심사 내용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들이 정책 방향에 맞춰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임
 - 경쟁제한성 판단의 주된 기준인 시장점유율 원칙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되 예외 인정 범위를 구체화
 - 부실기업 인수 등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부실기업 판단 기준을 마련
 -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제한성이 적은 일정한 유형의 기업결합은 15일 이내에 처리

- (평가) 금번 조치는 공정거래 정책에 의해 규제되어 오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나, 허용 기준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해소되지 않아 특히 시비 및 정책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기업결합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과 더불어 공정거래 정책 완화는 부실 대기업 처리를 비롯한 각종 M&A와 기업결합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특히 간이심사제도의 도입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절차 간소화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예외 인정은 과거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여전히 존재함
 -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소 불분명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위 "특혜시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정 반 석 bsjoung@hri.co.kr ☎724-4045)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p>▶ 시장점유율 기준에 의거한 기업결합 금지 원칙(기업결합으로 인해 해당 시장의 상위 1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70%가 되는 경우)은 유지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예외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5% 미만· 기업결합 이후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고 1위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2위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 이후 1, 2위간 혹은 2, 3위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3위 기업이 되는 경우· 상위 3사간의 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은 4위 기업이 되는 경우
<p>▶ 부실기업 인수 등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 외에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경우· 기업결합 이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 재무구조 악화로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그것이 예상되는, 혹은 기업결합 외에는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해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부실기업을 결합하는 경우
<p>▶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회사간 기업결합·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 대규모회사가 아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기업의 혼합결합·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의 분리, 독립 등 1사 또는 1기업그룹 단독의 회사 신설